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<p>중산층 주거혁신 NEWSTAY정책</p>	보 도 자 료		 <p>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</p>
	배포일시	2015. 9. 21(월) 총3매(본문3)	
	담당부서	• 공공주택총괄과 과장 김철홍, 사무관 양희관 • ☎ (044)201-4506	
2015년 9월 2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1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공공실버주택,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한다.

- 공공주택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: 유일호)는 공공실버주택 등의 근거 마련,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사유 추가,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확대,
 - 지난 8.28 개정·공포된 공공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9.22일부터 11.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 -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 - ① 우선, 9.2일 발표한 ‘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’의 후속조치로 ‘공공실버주택’과 ‘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’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.
 - ‘공공실버주택’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,
 -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*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, 일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,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% 이하를 3순위로 한다.
- * '15년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기준(월소득) : 1인가구 62만원, 4인가구 169만원 등
 ** '14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% : 3인가구 이하 기준 월소득 237만원
- ※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고령자·장애인에게 우선 공급

-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.
 - 공공실버주택은 '16년과 '17년에 각각 8개棟, 총 16개棟를 공급하되, 지자체 수요를 보아가며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며,
 -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10월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.
- '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'의 경우에는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·재건축하여 공급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구분	지원기준	지원단가	지원비율
기존 매입임대	매입호수	9,500만원/호	출자(보조) 45%, 용자 50%
리모델링 매입임대	공급호수	8천만원/호	

② 그리고,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.

- 이를 통해,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

*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

③ 더불어,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(보통 입주 1년전)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이 허용한다.

-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나,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또한, 지난 8.28일 공포('15.12.29 시행)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.

○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공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을 포함한다.

* 다만, 공공주택법에서 최저주거기준 면적(14㎡)은 만족하도록 함

- 이를 통해, 현행 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숙사,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, 특히 도심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더불어,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행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공공주택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.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○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

○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양희관 사무관(☎ 044-201-4506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